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중장기증권투자신탁[채권]

□ 변경 사유 : ① 제9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②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3. 3. 3.

□ 변경 내용

구분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----	------	-----	-----
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

투자결정시 안내	유의사항	기재 정정	정정전	정정후
		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 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 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요약정보
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2. 12. 30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9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3. 2. 11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1. 31 기준</u>
투자자 유의사항	기재 정정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 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 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



		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 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 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<u>경과하였음에도</u>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-	--	--	---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1. 31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1. 31 기준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제 9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<u>표준편차 : 1.74%</u>	<u>표준편차 : 2.99%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 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 9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2. 11. 기준</u> <u>2022. 12. 30. 기준</u>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 9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3. 2. 11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 매 현황	제9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3. 2. 11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 용실적	제9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3. 2. 11 기준</u>



제 4 부 집합투자지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1. 31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1. 31 기준</u>
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2)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·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 ① (생략)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~ ⑩ (생략)	(2)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·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 ① (현행과 같음)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 ③ ~ ⑩ (현행과 같음)